
불합리한 관행제거와 공정한 상표제도 구축을 위한
상표법 전부개정법률안 설명자료



2016. 2.

특 허 청
상표심사정책과

• • 목 차 • •

I. 전부개정 필요성	1
II. 전부개정 추진의 기본방향	2
III. 주요개정 내용	3
(1) 상표의 정의·표장의 개념·사용개념 등 정비	3
(2) 불사용취소심판제도의 합리적 보완	5
(3) 상표권 효력제한사유 규정의 정비	6
(4) 상표부등록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시점 변경	8
(5) 법 제23조제1항제3호를 상표부등록사유로 변경	10
(6) 상표권 소멸 후 1년간 출원금지에 관한 규정 삭제	11
(7)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반영	14
IV. 전부개정 추진일정	15

I. 전부개정의 필요성

◆ 단편적이고 잦은 부분개정으로 법률의 복잡성이 가중되고, 제도의 악용사례 증가로 공정성·합리성을 담보한 제도로의 변화 필요

□ 법률 체계의 정합성 제고

○ '49년 상표법 제정 이래 단발성의 제도 개선 수요에 따른 잦은 부분개정으로 법률의 복잡성이 가중*되어 논리적 일관성 결여

* 상표법은 '49년 제정 이후 31차례 개정되었으며, 특히 '90년 두 번째 전부개정 이후 총 23차례 부분개정되어 연평균 1회 이상 개정됨

○ 과도한 가지조항 및 특정 위치의 집중 배치(제5조, 제77조, 제86조 등)로 상표법에 대한 이해도 저하 초래

* '01년 국제출원 관련 규정 신설(§86) 및 '11년 특허법 준용규정 해소(§5, §77)로 가지조항이 급증하여, 본 조문 98개, 가지조문 136개로 비대칭적 구성

□ 사용주의 제도를 보완하여 상표제도의 악용 방지

○ 불사용 저장상표의 증가로 진정한 사업자의 상표선택 및 사용범위 제한, 과도한 심사물량 및 심사처리 지연 등 등록주의 문제점 부각

○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의 상표선점행위 및 불사용 상표권의 행사 등 상표권 남용행위의 증가

□ 불합리한 관행 제거 등 공정하고 합리적인 제도구축, 출원인의 편의 제고 및 규제완화 등

○ 상표의 정의·사용개념 등 정비, 상표권의 효력제한사유 규정의 정비, 악의적 모방상표 출원에 관한 규정 정비 등 불합리한 관행 제거 및 공정하고 합리적인 상표제도 구축

○ 직권보정대상 확대, 상표권 소멸 후 1년간 출원금지규정 삭제, 수수료 반환대상 정비 등 새로운 법률 개정수요 반영

II. 전부개정 추진의 기본방향

- ◆ 상표의 사용주의 요소를 보완하여 국민의 법감정에 어긋나는 행위의 감소를 유도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제도로 개선
- ◆ 상표등록출원인의 편의를 제고하는 등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법률로 전면 개편하고, 국제사회에서 선도적 지위 확보

□ 상표의 사용주의 요소를 보완하여 등록주의 폐단 방지

- 상표권의 효력제한 사유를 정비하여 실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되는 상표에 대한 상표권 효력제한의 합리적 판단근거 마련

□ 공정성·합리성을 담보한 상표제도의 설계

- 상표의 정의규정을 간결·명확하게 규정하고, 서비스표를 상표로 일원화하며, 표장의 유형을 예시적 열거규정으로 변경
- 상표 부등록사유를 판단시점을 등록여부결정시로 변경하고, 지정상품별로 권리범위확인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정비

□ 상표등록출원인의 편의제고 등 알기쉬운 상표법

- 상표권 소멸 후 1년간 출원금지규정 삭제하며, 상표등록출원 및 등록의 회복기간을 확대
- 상표법 전체적인 관점에서 각 개별 조항 전부를 재검토하여 조문 상호간 불일치한 부분을 조정하고 알기쉬운 용어로 구성

Ⅲ. 주요개정 내용

(1) 상표의 정의, 표장의 개념, 사용개념 등 정비

□ 개정 내용

- (현행) 상표의 정의가 간결하지 못하고, 상표로 기능하는 모든 것이 상표로 등록될 수 있음에도 이를 한정적·열거적으로 정의한 듯 오해의 소지가 있으며, 상표와 서비스표를 구별하여 법체계가 복잡
- (개정안) 개념상 중첩되고 확장가능성 없는 설명을 삭제하고, 표장의 유형을 예시적으로 열거하여 상표권의 보호범위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서비스표의 정의를 삭제하여 상표로 일원화

□ 개정의 필요성

- ‘商’이란 ‘상업’의 준말이므로, 이의 객체가 물건인 경우(상품)와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서비스)로 나눌 수 있는데,
 - 이를 다시 “상품을 생산·가공·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商’의 개념과 불필요하게 중첩
 - * 개인적인 범위에서 사용하는 것은 해석상 “상”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상거래” 혹은 “업으로서”와 같은 표현을 사용할 필요 없음
 - ‘商’의 개념은 생산·가공·판매에 한하지 않을뿐 아니라*, 향후 확장되는 상거래의 유형을 포섭할 수 없음
 - * 의료업이나 인터넷 서비스업 등은 생산·가공·판매의 개념에 포섭이 어려움
- 상표법은 상표에 관해 기술하고 대부분을 서비스표에 준용하여 상표법상 서비스표에 특유한 규정은 전무(全無)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구별하여 법·체계가 복잡해지고 국민들에게 오해를 초래

- 일반적으로 서비스업이란 용어 대신 서비스라는 용어가 사용되더라도 영어와 한문을 혼용한 서비스업이라고 표현함으로써 부자연스러움

* 일본, EU, 호주 등 대다수 국가에서 상표와 서비스표를 구분하지 않고 상표로 일원화하여 규정

□ 개정안(제2조)

현 행	개정안
<p>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상표”란 <u>상품을 생산·가공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u></p> <p>가. <u>기호·문자·도형, 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하거나 이들에 색채를 결합한 것</u> ⇒</p> <p>나. <u>다른 것과 결합하지 아니한 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 홀로그램, 동작 또는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u></p> <p>다. <u>소리·냄새 등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 중 기호·문자·도형 또는 그 밖의 시각적인 방법으로 사실적(寫實的)으로 표현한 것</u></p> <p><신 설></p>	<p>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상표”란 <u>자기의 상품(서비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타인의 상품을 구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u></p> <p><삭 제></p> <p><삭 제></p> <p><삭 제></p> <p>2. “표장”이란 <u>기호, 문자, 도형,</u></p>

현 행	개정안
<p>2. “서비스표”라 함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p> <p>3. ~ 11. <생 략></p>	<p>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동작 또는 색채 등으로서 그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出處)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표시를 말한다.</p> <p><삭 제></p> <p>3. ~11. <생 략></p>

(2) 불사용취소심판 제도의 합리적 보완

□ 개정 내용

- (현행) 불사용취소심판의 청구는 이해관계인만이 할 수 있고, 불사용취소심결이 확정되면 장래를 향하여 그 권리가 소멸(법제73조)
- (개정안) 불사용취소심판의 청구인 적격을 ‘누구든지’로 확대하고,
 - 불사용취소심결이 확정되면 ‘그 심판청구일에 소급’하여 권리가 소멸하는 것으로 규정(안 제119조제4항)

□ 개정의 필요성

- 불사용 저장상표의 누적으로 인하여 출원인의 상표선택의 범위가 좁고, 취소심판 청구시 이해관계의 유무에 대한 다툼으로 인해 심리가 지체 발생

- 권리로써 보호해야할 실체가 없음에도 등록이라는 형식적인 행위에 민·형사상 책임을 인정하여 국민의 법감정에 어긋남

* 유럽과 일본은 1) 누구든지 불사용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2) 명목적 사용에 대해서는 사용증거를 인정하지 않으며, 3) 취소심판청구일에 상표권이 소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제119조제4항)

현행	개정안
<p>제73조(상표등록의 취소심판) ① ~ ⑤ (생략)</p> <p>⑥ 제1항에 따른 취소심판은 <u>이해관계인만</u>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제5호, 제6호 또는 제8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하는 심판은 <u>누구든지</u> 청구할 수 있다. ⇒</p> <p>⑦상표등록을 취소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상표권은 그때부터 소멸된다. <단서 신설></p>	<p>제119조(상표등록의 취소심판) ① ~ ④ (개정안과 같음)</p> <p>⑤ 제1항에 따른 취소심판은 <u>누구든지</u> 청구할 수 있다. 다만, <u>제1항제4호 및 제6호에</u>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하는 심판은 <u>이해관계인만</u>이 청구할 수 있다.</p> <p>⑥ 상표등록을 취소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상표권은 그때부터 소멸된다. <u>다만, 제1항제3호에</u>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취소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u>그 심판청구일에 소멸하는 것으로 본다.</u></p>

(3) 상표의 효력제한사유 규정의 정비

□ 개정 내용

- (현행) 법 제51조는 상표의 사용태양(제1호)과 구성태양(제2~4호)에 따른 상표권 제한사유이나,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로 표현(법 제51조)

- (개정안) 자기의 성명·상호 등을 간판 등에 사용(제1호)하는 경우, 그 구성태양과 관계없이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상표”로 그 표현을 변경(안 제90조 제1항제1호)

□ 개정의 필요성

- 판례에 따라 상호 등의 사용이 거래사회의 통념상 필요한 범위 내의 사용인가에 따라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함*

* 법원도 “사용된 표장의 위치, 배열, 크기, 다른 문구와의 연결관계, 도형과 결합되어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 실제 사용태양을 종합하여 거래통념상 자기의 상호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 판시함(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0후3807 판결(평양 옥류관 사건))

□ 개정안(제90조제1항제1호)

현 행	개정안
<p>제51조(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① 상표권(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을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p> <p>1. 자기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초상·서명·인장 또는 저명한 아호·예명·필명과 이들의 저명한 약칭을 <u>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u></p>	<p>제90조(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① 상표권(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을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p> <p>1. 자기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초상·서명·인장 또는 저명한 아호·예명·필명과 이들의 저명한 약칭을 <u>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상표</u></p>

[4] 상표부등록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시점 변경

□ 개정 내용

- (현행) 상표부등록사유를 공익적 거절사유와 사익적 거절사유로 나누어 사익적 규정이라고 보는 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존재에 관한 판단시점을 “상표등록출원시”로 규정(법 제7조제2항)
- (개정안) 상표부등록사유의 존재에 관한 판단시점을 공익·사익의 구별없이 등록여부결정시로 변경(안 제34조제2항)

□ 개정의 필요성

- 하자가 있거나 이미 소멸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상표등록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 초래
 - 출원인은 관련 사유가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다시 출원을 해야 하므로, 시간과 비용의 불경제가 초래된다는 지적
 - * 제6호부터 제10호까지는 원칙적으로 출원시를 기준으로 거절이유 해당 여부를 판단하지만, 예외적으로 불사용취소심판이 청구된 경우에 제7호는 등록여부결정시에 판단함
- 미·일·EU 등도 상표부등록사유의 존재에 관하여 등록여부 결정시에 판단하고 있으므로 국제적 조화의 필요성이 대두

□ 개정안(제34조제2항)

현 행	개정안
제7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① (생략)	제34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① (생략)
⇒	
② 제1항제6호·제7호·제7호의2·제8호·제8호의2·제9호·제	② 제1항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

현행

9호의2 및 제10호는 상표등록 출원 시에 이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상표등록출원인(이하 “출원인”이라 한다)이 해당 규정의 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표등록결정 및 상표등록거절결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이하 “상표등록여부결정”이라 한다) 시를 기준으로 한다.

③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73조제1항제3호를 이유로 하는 상표등록 취소심판의 청구인과 출원인이 같고 그 취소심판 청구일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상표등록출원이 제1항제7호·제7호의2·제8호 또는 제8호의2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표등록여부결정 시를 기준으로 한다.

1. 제43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경우
2. 상표권자가 상표권 또는 지정상품의 일부를 포기한 경우
3. 상표등록 취소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

개정안

(이하 “상표등록여부결정”이라 한다)을 할 때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한다. 다만, 제1항제11호·제13호·제14호·제20호 및 제21호의 경우는 상표등록출원을 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한다.

1. 제55조에 따른 상표등록거절결정
2. 제68조에 따른 상표등록결정

<삭제>

(5) 법 제23조제1항제3호를 상표부등록사유로 변경

□ 개정내용

- (현행)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Paris Convention for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제6조의7의 취지를 상표법에 반영하여
 - 제23조제1항제3호에 외국 상표권자의 국내 대리점, 총판 등 대리인이나 대표자가 동일·유사한 상표를 무단으로 국내에서 등록하는 것을 이의신청을 통하여 방지하도록 규정(법 제23조제1항제3호)
- (개정안) 상표부등록사유(안 제34조)로 이전하고, 취소심판 사유에서 무효심판 사유로 변경(안 제34조제1항제18호)

□ 개정의 필요성

- 현행은 상표등록거절결정에 관한 조문에서 이 부분을 규정하여 국민 뿐만 아니라 심사관도 조문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 외국의 입법례를 검토해 본 결과, 다수의 국가에서 이를 부등록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의신청 기간의 도과 등 과오등록된 경우 취소가 아닌 무효심판 사유로 두는 것이 바람직

□ 개정안(제34조제1항제18호)

현행	개정안
제23조(상표등록거절결정 및 거절이유통지) ① 심사관은 상표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상표등록출	제34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는 제33조에도 불구하고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현행

원에 대하여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3. 조약당사국에 등록된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로서 그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대리인이나 대표자 또는 상표등록출원일 전 1년 이내에 대리인이나 대표자이었던 자가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는 등 정당한 이유없이 그 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출원을 한 경우. 다만, 그 권리자로부터 상표등록이의신청이 있거나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제공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안

21. 조약당사국에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로서 그 등록된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와의 동업·고용 등 계약관계나 업무상 거래관계 또는 그 밖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가 그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출원한 상표

(6) 상표권 소멸 후 1년간 출원금지에 관한 규정 삭제

□ 개정 내용

- (현행) 선출원등록상표가 실효된 뒤에도 1년 정도는 수요자 사이에 그 상표에 관한 기억과 신용이 남아 있어 상품 출처의 혼동을 일으킬 우려로 인해 상표권이 소멸한 날부터 1년간은 타인의 등록을 배제하고 있음(법 제7조제1항제8호 등)

* 동 조항은 수요자의 잔상효과로 인한 혼동방지 및 원권리자에게 권리회복의 기회를 주려는 취지로 도입(1973. 2. 8.)

- (개정안) 법 제7조제1항제8호 및 제8호의2 및 그 규정의 적용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제7조제4항을 삭제하여, 상표권 소멸후 1년을 기다림 없이 상표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

□ 개정의 필요성

- 등록상표간 권리이전이 허용되고, 2인 이상의 타인에게 사용권 설정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므로 동 조항으로 출처의 혼동가능성을 방지할 수 없고,
- 소멸된 상표가 사용된 적이 없다면 권리회복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없고, 사용된 것이라면 선사용권에 의한 보호가 가능하므로 존치 이유 적음

<최근 3년 §7①8 거절결정 통계>

년도	거절결정건			총 거절결정건	백분율(%)
	7-1-8-A	7-1-8-B	합계		
2010	288	37	325	23,359	1.3
2011	208	59	267	30,656	0.8
2012	240	51	291	29,498	0.9
총합계	736	147	883	83,513	1.0

* 7-1-8-A : 상표권 소멸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7-1-8-B : 존속기간 갱신등록 유예기간(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개정안(법 제7조제1항제8호 · 제8호의2, 제7조제4항)

현 행	개정안
<p>제7조(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는 제6조에도 불구하고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p> <p>8. <u>상표권이 소멸한 날(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u></p>	<p>제34조(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는 제33조에도 불구하고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p> <p><삭 제></p>

현행

있을 경우에는 심결확정일을 말한다)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타인의 등록상표(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을 제외한다)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8의2.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이 소멸한 날(단체표장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있을 경우에는 심결확정일을 말한다)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 단체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인식되어 있는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④ 제1항제8호 및 제8호의2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등록상표가 상표권이 소멸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2. 등록상표가 제1항제6호·제9호·제9호의2·제10호·제11호·제12호 및 제12호의2, 제8조 또는 제73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사유로 무효 또는 취소의 심결이 확정된 후 그 정당한 출원인이 상표

개정안

<삭 제>

<삭 제>

현 행	개정안
<p><u>등록출원한 경우</u></p> <p>3. <u>등록상표에 대한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이 되지 아니한 채 제43조제2항 단서에 따른 6개월의 기간이 지난 후에 상표등록출원한 경우</u></p> <p>4. <u>제7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취소심판이 청구된 등록상표와 같거나 유사한 표장이 상표등록출원된 경우</u></p>	

(7)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반영

- (원칙) 조문의 신설·삭제·이동·결합, 가지번호 조문의 해소, 삭제 조문 정리,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문맥 순화
 - 자주 쓰이는 중요조문은 조문의 신설·삭제 등으로 항이나 호의 위치가 바뀌지 않도록 재구성
- (용어정비) 어려운 한자어는 쉬운 말로 고쳐쓰고,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한자어가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에 한자어를 병기
 - 일본어 명사형 접속사 ‘の’에 해당하지만, 우리 말에서는 불필요한 ‘의’를 삭제하고, ~하는 경우는 ~한 때로 수정 등
- (문맥정비) 복잡한 문장은 단문으로 나누고, 주어를 찾아 문두에 위치하게 하였으며(1문장 1주어 원칙), 목적어, 보어 등을 제자리로 바꿈
 - 이중부정문(~하지 않는 한 ~할 수 없다)은 긍정문(~하면 ~할 수 있다)로 고쳐쓰고, 수동형 문장은 능동형 문장으로 변경(그대로 두는게 자연스러운 경우는 제외) 등

IV. 전부개정 추진일정

- '13. 7. 개정안 기본계획 보고(청장)
 - '13. 9. 산재권운영협의회 심의
 - '13. 9. 청내 의견문의(산하 유관기관, 상표디자인협회 등),
 - '13. 10. 개정안 확정(청장 결재), 지경부 보고
 - '13. 11. ~ 12. 입법예고(40일 이상), 관계부처 협의*
 - '13. 11. 22(금), 공청회 개최
 - * 국민권익위원회(부패), 여성가족부(성별), 통계청(통계), 규제심사(규개위)
 - '13. 11. 산업통상자원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 의견문의(10일)
 - '13. 12. 법제처 제출 및 심사('14.1.~12.)
 - '14. 12. 차관/국무회의
 - '14. 12. 대통령 재가 및 국회제출
 - '15. 4.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상정
 - '15. 11.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대안의결
 - '16. 2. 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 '16. 2. 4. 국회 본회의 통과
 - '16. 9. 개정법 시행
- ※ 하위법령 개정 : '16. 2. ~ '16. 8.